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6. 1 선고 2016가단217634 판결 [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5. 18.

판결 선고 2017. 6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2,332,790원 및 이에 대한 2017. 5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진시 C 임야 101,584m² 중 지분 542227분의 515449.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. 3. 8. 접수 제8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이혼재

별지